사업장별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

1 관련법률

- 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- □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
- □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

2 사업장별 규제사항

□ 업종별 규제내용

연번	업종	대상용품	준수사항
1	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(일반음식점 등)	- 1회용 컵, 접시, 용기 등 - 1회용 비닐식탁보 - 1회용 봉투 및 쇼핑백	사용금지사용금지무상제공금지
2	대규모점포	- 1회용 봉투 및 쇼핑백	- 사용금지
3	목욕장업	- 1회용 면도기, 칫솔 등	- 무상제공금지
4	체육시설	- 1회용 응원용품	- 무상제공금지
5	도매 및 소매업 (면적 33 ~ 165㎡)	- 1회용 봉투 및 쇼핑백	- 무상제공금지
6	도매 및 소매업 (면적 165㎡이상)	- 1회용 봉투 및 쇼핑백	- 사 용 금지

※ 사용금지 : 유・무상 제공 절대금지, 무상제공금지 : 유상판매 가능

□ 예외사항(사용가능한 경우)

- (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)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발생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 가능
- ☞ (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) 생분해성수지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가능
- ☞ (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) 음식물을 포장·배달하는 경우 사용가능
- ☞ (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)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가능
- ☞ (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)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사용가능
- ☞ (도소매업) 면적 33㎡미만 매장은 1회용품 규제대상 제외

□ 주요사항

- ☞ 대형마트 등 면적 165㎡이상 슈퍼마켓은 1회용 봉투 사용금지
- ☞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(유상판매 가능)
- ☞ 커피전문점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(포장 시 사용가능)
- ☞ 일반식당 내 1회용 컵 등 사용금지(자판기를 통한 종이컵 사용가능)

위반사업장 과태료

매장면적 및 위반횟수에 따라 5 ~ 300만원 과태료 부과

■ 문의 : 김제시청 환경과(☎ 063-540-3543)